
2011년 지방재정공시



김 천 시

목 차

□ 공 시 총 괄	3
□ 공 통 공 시	7
○ 공통공시 총괄	9
○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9
▪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11
▪ 지방채무 현황	15
▪ 일시차입금 현황	16
▪ 채권관리 현황	17
▪ 기금운용 현황	18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20
▪ 통합재정정보(예산편)	21
○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23
▪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	23
▪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27
▪ 주민주요 관심항목	34
○ 주민주요 관심항목 집행내역	49
▪ (붙임 1)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51
▪ (붙임 2)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57
▪ (붙임 3)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60
□ 특 수 공 시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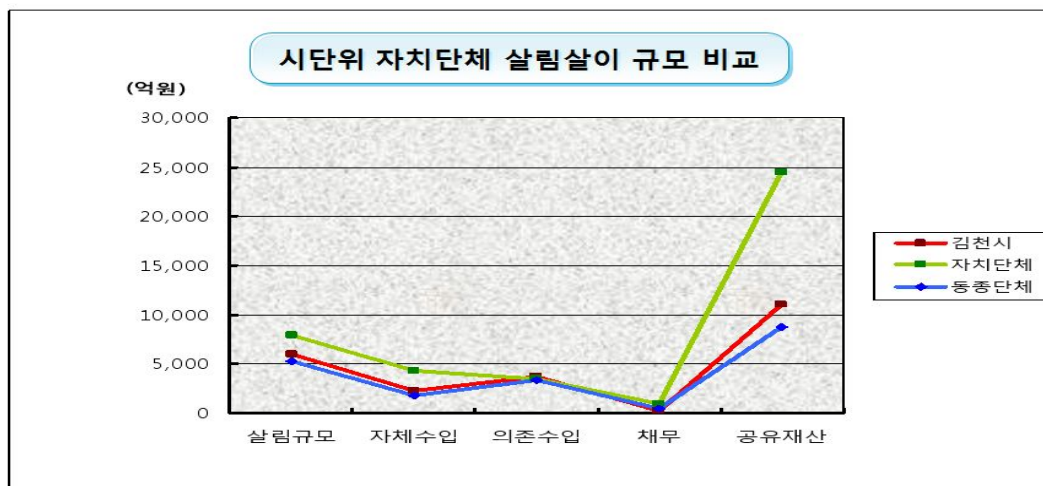
공 시 총 괄

2011년 김천시 지방재정공시

김천시 재정공시 제2011-1호(2011. 8.)

김 천 시 장 (인)

- ◆ 우리시의 2010년도 살림규모는 6,032억원으로, 전년대비 23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은 2,294억원이며, 이중 지방세는 483억원으로 시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354천원입니다.
 - 의존재원은 3,738억원으로, 우리시 살림규모의 61.9%입니다.
 - ※ 살림규모 : 자체수입 + 의존재원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 자체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보조금
- ◆ 태풍 『루사』 수해복구비, 전국체전 관련 시설복구비, 지방교부세 감액 보전 등을 위한 우리 시의 채무는 222억원이며, 시의 1인당 지방채무는 163천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2010년도에 2,559건 1,121억원이 증가하고, 500건 102억원이 감소하여, 현재는 총 11,055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 우리 시와 자치단체 및 동종단체의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자치단체 : 75개 시단위 자치단체
 - 동종단체 : 자치단체를 유형별로 분류, 시단위 D군(21개 자치단체) 해당



◆ 우리 시의 2010년 살림규모는

자치단체 평균액(7,977억원) 보다 1,945억원이 적고,
동종단체 평균액(5,245억원) 보다 787억원이 많습니다.

-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자치단체 평균액(4,312억원) 보다 2,018억원이 적으며,
동종단체 평균액(1,789억원) 보다 505억원이 많습니다.
- 의존재원은
자치단체 평균액(3,527억원) 보다 211억원이,
동종단체 평균액(3,389억원) 보다 349억원이 많습니다.
- 채무액은
자치단체 평균액(906억원) 보다 684억원이,
동종단체 평균액(463억원) 보다 241억원이 적습니다.
1인당 채무액 또한
자치단체 평균액(294천원) 보다 131천원이,
동종단체 평균액(430천원) 보다 267천원이 적습니다.
- 한편 공유재산은
자치단체 평균액(24,478억원)과 비교하여 13,423억원이 적고,
동종단체 평균액(8,782억원)과 비교하여 2,273억원이 많습니다.

◆ 우리 시의 2010년도 일반회계 결산기준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6.4%이며(전국 평균 52.5%),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72.6%(전국 평균 76.1%)입니다.

※ 자 립 도 : 자체수입(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 / 예산규모

자 주 도 : 자체수입+자주재원(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 예산규모

예산규모 : 자체수입+자주재원+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자치단체에
비해 자체수입과 공유재산이 적으나,
동종단체에 비해 자체수입과 공유재산액이 많으며,
특히 지방채무는 자치·동종단체에 비해 적어 재정건전성은
우수한 편입니다.
그러나 살림규모 증대와 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 통 공 시

- ◆ 공통공시 총괄
- ◆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 ◆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1 공통공시 총괄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 결과		'10년도 (A)	'09년도 (B)	증감 (A-B)	증감률 (A/B-1)	전국 평균	자치단체 평균	동종단체 평균
① 세입·세출결산	세입	603,152	626,470	△23,318	△3.7	878,516	797,739	524,450
	세출	478,934	532,411	△53,477	△10.0	764,346	649,157	429,149
②-1 지방채무(원금기준)		22,206	28,053	△5,847	△20.8	133,888	90,594	46,281
②-2 일시차입금(원금기준)		0	0	0	0	0	0	0
③ 채권 현재액(원금기준)		7,993	7,380	613	8.3	79,028	9,331	10,204
④ 기금운용 현황		6,656	5,778	878	15.2	39,131	29,971	9,145
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공유재산	1,105,482	1,003,584	101,898	10.2	2,450,443	2,447,825	878,178
	물품	4,556	5,067	△511	△10.1	7,876	7,172	4,019
⑥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자산총계	2,219,279	2,135,920	83,359	3.9	3,890,885	4,291,228	2,253,944
	부채총계	38,441	38,150	291	0.8	171,123	134,116	67,597
	수익총계	453,117	442,740	10,377	2.3	687,667	582,059	400,681
	비용총계	312,931	311,772	1,159	0.4	596,187	465,457	303,106
⑦ 통합재정수지(예산편기준)		△1,858	△15,684	13,826	88.2	△8,901	1,362	1,951
⑧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전국 및 동종단체 평균은 '10년도 금액 기준임

※ 자치단체 평균 : 시도 / 시군구 자치단체 수로 나눈 평균 의미

※ 동종단체 평균 : 자치단체를 유형별로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산정한 평균 의미

※ 금액은 백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기입하고, 비율 등 소수점은 소수점 아래 한자리만 표시(←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 결과		'10년도 (A)	'09년도 (B)	증감 (A-B)	증감률 (A/B-1)	전국 평균	자치단체 평균	동종단체 평균
① 재정분석·진단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감사원 등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요 관심 항목	③-1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61,289	59,480	1,809	3.0	66,996	68,252	53,500
	③-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521	527	△ 6	△1.1	673	640	444
	③-3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194	190	4	2.1	177	181	140
	③-4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2,705	3,351	△646	△19.3	3,722	5,605	4,807
	③-5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18,368	24,121	△5,753	△23.9	29,485	36,567	21,897
	③-6 기관운영 기본경비 집행현황	1,974	2,135	△161	△7.5	4,191	4,634	2,925
	③-7 포상금 집행현황	1,988	1,451	537	37.0	2,266	2,350	1,424
	③-8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11,193	10,546	647	6.1	11,484	15,308	13,758
	③-9 연말지출 비율	17,271	11,778	5,493	46.6	12,700	15,712	15,230
	③-10 지방세 지출 예산현황	5,486	5,855	△369	△6.3	54,571	22,573	6,087
	③-11 맞춤형복지비 운영현황	1,420	972	448	46.1	1,534	1,616	1,055
	③-12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2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1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가. 세입결산('10년도)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구분		예산현액	정수 결정액 (A)	실제 수납액 (B)	B/A	미수납액		
						계 (A-B)	불 결 순 액	미수납 이월 액
합계		595,438	614,941	603,152	98.1	11,789	938	10,851
일반회계	소계	491,867	504,353	498,902	98.9	5,451	822	4,629
	지방세	45,000	53,362	48,250	90.4	5,112	772	4,340
	세외수입	81,886	83,888	83,549	99.6	339	50	289
	지방교부세	217,192	219,344	219,344	100.0	0	0	0
	조정교부금및 조정보전금	10,622	10,893	10,893	100.0	0	0	0
	보조금	137,167	136,866	136,866	100.0	0	0	0
	지방채및 예치금회수	0	0	0	0.0	0	0	0
공기업	소계	31,766	32,115	31,794	99.0	321	15	306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4,766	14,684	14,484	98.6	200	8	192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7,000	17,431	17,310	99.3	121	7	114
기타	소계	71,805	78,473	72,456	92.3	6,017	101	5,916
	수특질개선헌 특별회계	2,591	2,674	2,674	100.0	0	0	0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2,101	2,126	2,033	95.6	93	0	93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특별회계	770	1,040	789	75.9	251	44	207
	새마을소득특별 지원운영특별회계	2,450	2,682	2,599	96.9	83	0	83
	주택사업특별회계	760	787	756	96.1	31	17	14
	농공단지조성 관리특별회계	350	355	354	99.9	1	0	1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	1,407	1,407	1,407	100.0	0	0	0
	치특수별사 업회계	2,790	2,930	2,918	99.6	12	4	8
	주특차장운 영회계	5,645	11,469	5,923	51.6	5,546	36	5,510
	대지보상 특별회계	820	824	824	100.0	0	0	0
	기반시설관 리특별회계	36	37	37	98.7	0	0	0
	김천일판산업단지 조성특별회계	52,085	52,142	52,142	100.0	0	0	0

▶ '10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입결산 총괄편 내용임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입결산	468,368	473,729	555,739	626,470	603,152

▶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입결산 총괄편 내용의 실제수납액



- ▶ '10년 세입감소의 주요인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예산의 축소가 주요인임.
 '09년 교부세 감액으로 173억의 부족재원이 발생하였으나 지방채 발행 60억으로 최소화함으로써 예산 집행잔액으로 발생하는 '10년 순세계잉여금 축소.
 또한 '09년부터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국가시책으로 시행된 예산 조기집행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상반기부터 발주, 준공됨으로써 이월사업 축소.



세입(歲入)

- 일정 회계연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
- 세입의 주된 재원은 조세(지방세) 수입이며, 재산매각수입, 사용·수수료 수입 등이 세입에 포함됨

나. 세출결산('10년도)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A)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B)	%			%
합 계		595,438	509,349	478,934	80.4	66,117	50,387	8.5
일반 회 계	소 계	491,867	445,272	428,867	87.2	37,485	25,515	5.2
	일 반 공 공 행 정	30,805	27,016	26,151	84.9	2,185	2,469	8.0
	공 공 질 서 및 안 전	20,586	18,044	14,765	71.7	5,520	301	1.5
	문 화 및 관 광	25,760	23,836	23,748	92.2	1,564	448	1.7
	환 경 보 호	31,580	27,609	24,127	76.4	6,467	986	3.1
	사 회 복 지	105,928	99,686	99,276	93.7	3,211	3,441	3.2
	보 건	7,698	7,472	7,471	97.1	0	227	2.9
	농 립 해 양 수 산	97,486	88,660	82,559	84.7	11,100	3,827	3.9
	산 업 중 소 기 업	7,531	6,157	6,146	81.6	186	1,199	15.9
	수 송 및 교 통	35,691	31,164	30,262	84.8	2,980	2,449	6.9
	국 토 및 지 역 개 발	57,774	52,977	51,711	89.5	4,272	1,791	3.1
	예 비 비	4,641	0	0	0	0	4,641	100.0
	기 타	66,387	62,651	62,651	94.4	0	3,736	5.6
공 기 업	소 계	31,766	21,892	20,353	64.1	450	10,963	34.5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4,766	12,573	11,035	74.7	0	3,731	25.3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7,000	9,319	9,318	54.8	450	7,232	42.5
기	소 계	71,805	42,185	29,714	41.4	28,182	13,909	19.4
	수 질 개 선 특 별 회 계	2,591	2,517	2,517	97.1	0	74	2.9
	의 료 보 호 비 특 별 회 계	2,101	2,030	2,030	96.6	0	71	3.4
	주 민 소 득 지 원 및 생 활 안 정 특 별 회 계	770	351	351	45.6	0	419	54.4
	새 마을 소 득 특 별 지 원 운 영 특 별 회 계	2,450	453	453	18.5	0	1,997	81.5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760	44	44	5.9	43	673	88.5
	농 공 단 지 조 성 관 리 특 별 회 계	350	227	227	64.8	0	123	35.2
	공 업 단 지 조 성 특 별 회 계	1,407	418	417	29.6	0	990	70.4
	치 수 사 업 특 별 회 계	2,790	1,991	1,981	71.0	0	809	29.0
	주 차 장 운 영 특 별 회 계	5,645	1,403	1,293	22.9	130	4,222	74.8
타	대 지 보 상 특 별 회 계	820	125	124	15.2	0	696	84.8
	기 반 시 설 관 리 특 별 회 계	36	0	0	0.0	0	36	100.0
	김 천 일 반 산 업 단 지 조 성 특 별 회 계	52,085	32,626	20,277	38.9	28,009	3,799	7.3

▶ '10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임

▶ 다음연도 이월액 억원의 유형별 내역은 명시이월 542억원, 사고이월 119억원임.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	357,842	347,242	429,025	532,411	478,934

▶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 '07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던 세출결산액은 공공질서및안전, 문화및관광, 사회복지 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 세출 감소로 전년 결산대비 10.04% 감소. 세출결산액 감소는 세입감소와 연계한 세출예산 편성이 주요인임.



세출(歲出)

-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
-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 취득, 지방채 상환 등을 위한 지출

②-1 지방채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0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채무액 (E/F),천 원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28,053	△5,847	0	5,847	22,206		163
일 반 회 계	26,400	△5,360	0	5,360	21,040		154
특별회계						136,136	
소 계	1,653	△487	0	487	1,166		9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675	△223	0	223	452		4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978	△264	0	264	71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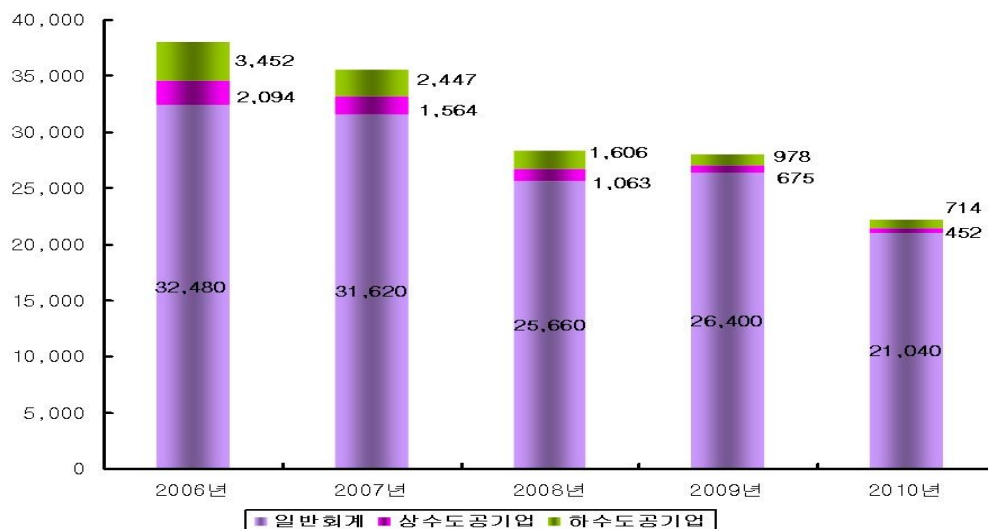
- ▶ '10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회계별 현황임
- ▶ 인구수는 2010. 12. 31일 기준
- ▶ 1인당 채무액은 천원단위로 표시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채무현황	38,026	35,631	28,329	28,053	22,206

-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채무 연도별 추이



- ▶ 채무발행 내역은 태풍루사피해 2차복구비 160억원, 시설건립(시의회청사외 4건) 126억원, 교부세감액분 60억원, 공기업특별회계 48억원이 있으며, 계획에 따른 연차별 상환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지방채(地方債)

- 지방자치단체자치권의 하나인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하여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말하는데 그 채무이행기간은 대개의 경우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며, 이와 같은 지방채 발행은 증서차입 또는 증권발행의 형식을 취함

②-2 일시 차입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B)	소멸액(C)
합 계	0	0	0
일 반 회 계	0	0	0
특 별 회 계	0	0	0
기 금 회 계	0	0	0

일시차입금

- 세계상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자하여 쓰고 당해 연도내의 수입으로서 상환해야 하는 것을 말함
- 일시차입금은 세출의 재원이 될 수 없고 일시적으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지급자금의 부족이 생길 때 사용(지방재정법 제14조)

③ 채권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0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7,380	613	1,409	796	7,993
일	반 회 계	5,031	463	463	0	5,494
공 기 업	소 계	0	41	41	0	41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0	2	2	0	2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0	39	39	0	39
기 타 특 별 회 계	소 계	2,349	109	905	796	2,458
	의료보호비특별회계	89	4	14	10	93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1,022	163	659	496	1,185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운영특별회계	1,208	△40	232	272	1,168
	주택사업특별회계	30	△18	0	18	12

- ▶ '10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원금기준)
- ▶ 일반회계 채권은 공무원학자금대여금의 융자금채권 등이 이에 속하며
- ▶ 특별회계 채권은 저소득층 및 일반시민을 위한 융자금채권이 대부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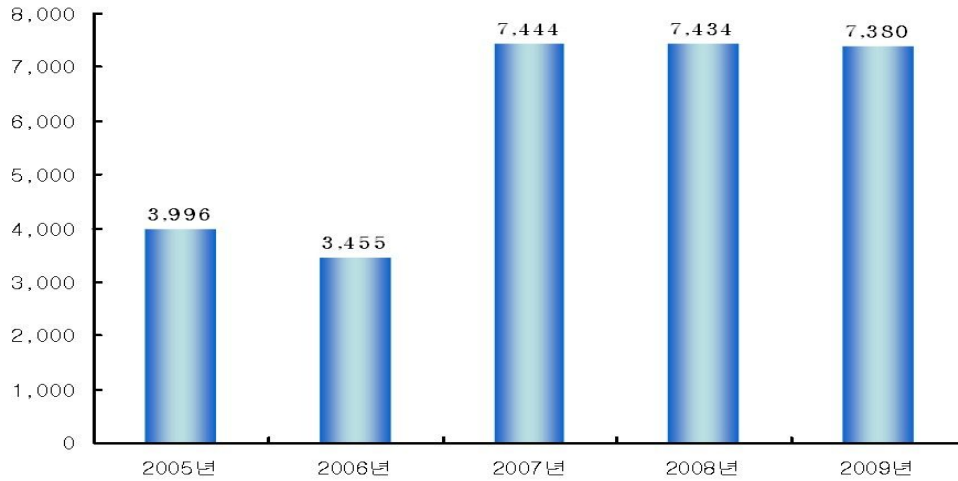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채권현황	3,455	7,444	7,434	7,380	7,993
일반회계	190	4,604	4,986	5,031	5,494
공기업특별회계	285	348			41
기타특별회계	2,980	2,492	2,448	2,349	2,458

-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 연도별 추이

(백만원)



채권(債券)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는 금원 및 사법적 계약에 의한 금원 등이 해당

④ 기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종류별	구 분	'0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0년도 현재액 (A+B)
			계 (B=C-D)	조성액(C)	사용액(D)	
합	계	5,778	878	1,504	626	6,656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00	0	5	5	200
노 인 복 지 기 금		401	36	36	0	437
여 성 발 전 기 금		404	34	34	0	438
식 품 진 흥 기 금		229	27	40	13	256
체 육 진 흥 기 금		309	△31	9	40	278
재 난 관 리 기 금		1,767	226	263	37	1,993
투 자 유 치 진 흥 기 금		1,352	1,015	1,049	34	2,367
자 활 기 금		170	53	53	0	223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민지원기금		946	△482	15	497	464

▶ '10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현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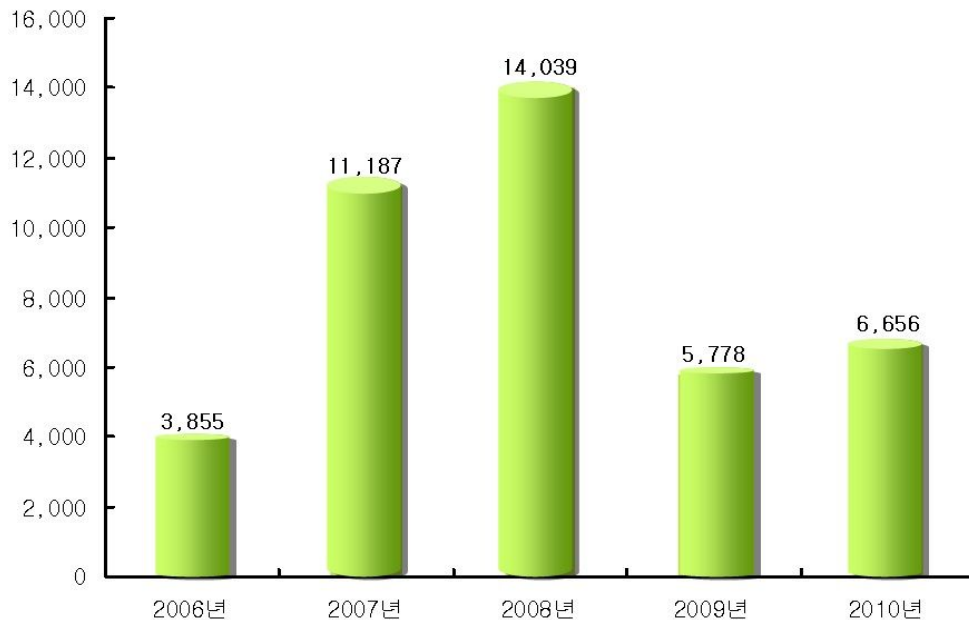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기금운용현황	3,855	11,187	14,039	5,778	6,656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임.

기금 연도별 추이

(백만원)



기금(基金)

-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영하는 특정자금
-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시책목적을 달성

⑤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가. 공유재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09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0년도 현재액		비 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41,944	1,003,584	2,559	112,102	500	10,204	44,003	1,105,482	
토 지	27,977	262,768	1,126	20,306	492	10,146	28,611	272,928	
건 물	292	116,389	35	25,686	2	58	325	142,017	
입 목 족	1	126,971	0	185	0	0	1	127,156	
공 작 물	3,204	496,409	1,330	65,540	0	0	4,534	561,949	
기계기구	145	926	68	385	6	0	207	1,311	
유가증권	10,323	52	0	0	0	0	10,323	52	
용익물권	1	30	0	0	0	0	1	30	
회 원 권	1	39	0	0	0	0	1	39	

▶ '10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나. 물 품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09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0년도 현재액		비 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435	5,067	61	1,001	90	1,512	406	4,556	
구 매	39	194	39	544	0	0	78	738	
관리전환	△60	△309	22	457	12	683	△50	△535	
기 타	456	5,182			78	829	378	4,353	불용, 폐기, 손망실 등

▶ '10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 작성대상물품 : 28개 정수물품

⑥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2010. 12. 31 기준) : 별책 참조

- 1) 결산총평
- 2) 재무제표
- 3)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4) 필수 보충정보
- 5) 부속 명세서

※ '10회계년도 재무보고서 전체

⑦ 통합재정정보(예산편)

(단위 : 백만원, 최종예산기준)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 모	통합재정 수지(1)	통합재정 수지(2)
	세입	지출	융자 회수 (A)	융자 지출 (B)	순융자 (B-A)	순세계 잉여금			
총 계	455,673	496,730	259	6,350	6,091	45,290	502,821	△47,148	△1,858
일반회계	423,725	402,819	0	5,000	5,000	27,595	407,819	15,906	43,501
기 타 특별회계	12,142	59,192	259	1,350	1,091	9,600	60,283	△48,141	△38,541
공 기 업 특별회계	19,429	31,023	0	0	0	8,095	31,023	△11,594	△3,499
기 금	377	3,696	0	0	0	0	3,696	△3,319	△3,319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1) : 세입-(지출+순융자)
- ▶ 통합재정수지(2) : 세입-(지출+순융자)+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 당해연도의 순수한 세입(순계예산)에서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
 - ⇒ 예산총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 계상된 부분의 공제없이 단순 합계한 세입·세출의 총액
 - ⇒ 예산순계 : 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부분을 공제한 순세입·세출의 총액

- ▶ 통합재정분석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기타, 공기업(직영)), 기금
-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 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 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 ▶ 통합재정수지 : 당해 연도의 순수한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

⑧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2009년 회계기준)

- ◆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
-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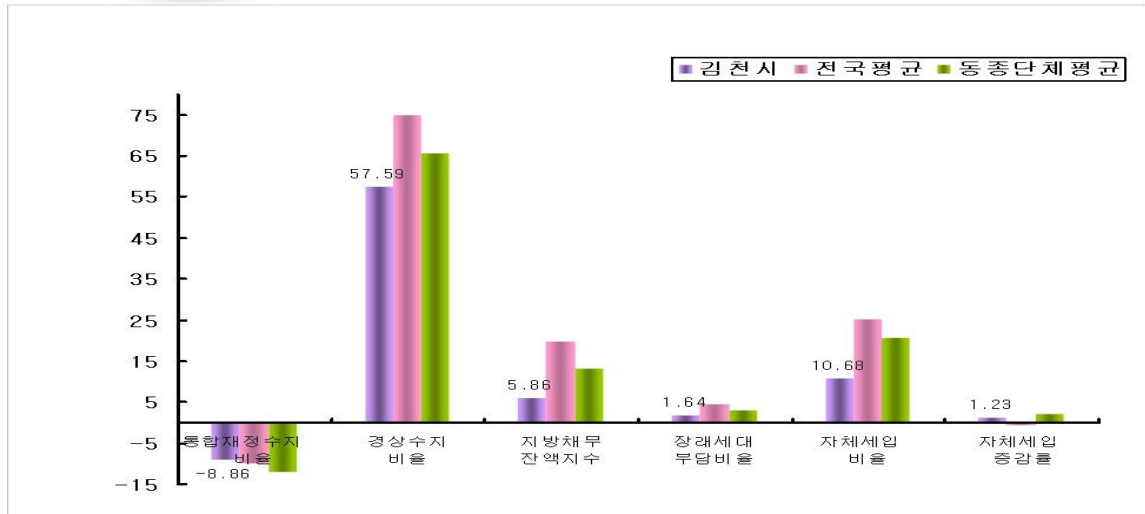
③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2010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분석지표)		김천시	전국평균	동종단체 평균	
I. 건전성 (재정상태 지표)	1. 통합재정수지비율	△8.86%	△9.89%	△12.03%	
	2. 경상수지비율	57.59%	74.82%	65.61%	
	3. 지방채무잔액지수	5.86%	19.78%	13.09%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07%	2.53%	1.34%	
	5. 장래세대부담비율	1.64%	4.42%	3.00%	
	6. 자체세입비율	10.68%	25.19%	20.80%	
	6-1. 자체세입증감률	1.23%	△0.53%	2.20%	
II. 효율성 (재정운용 노력지표)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0.9981	1.0002	0.9967
		8. 지방세채납액 축소 노력도	0.1899	0.0114	△0.0379
		9.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0306	1.0454	1.0515
		10. 세외수입채납액 축소 노력도	0.6025	△0.0336	△0.0879
		11.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42	0.9974	0.9954
	세출	12.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787	△0.0035	△0.0002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587	0.1432	0.1557
		14.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700	0.1502	0.1319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0349	0.1651	0.1808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0136	0.0876	0.0625
III. 계획성	17.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비율	100.83%	106.54%	103.98%	
	18. 예산집행률	85.51%	86.84%	81.77%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62.09%	46.57%	58.59%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51.27%	61.62%	55.27%	

- ▶ 재정분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현황과 운영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결산자료를 토대로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을 평가함
(단, '10년 재정분석은 '09 회계연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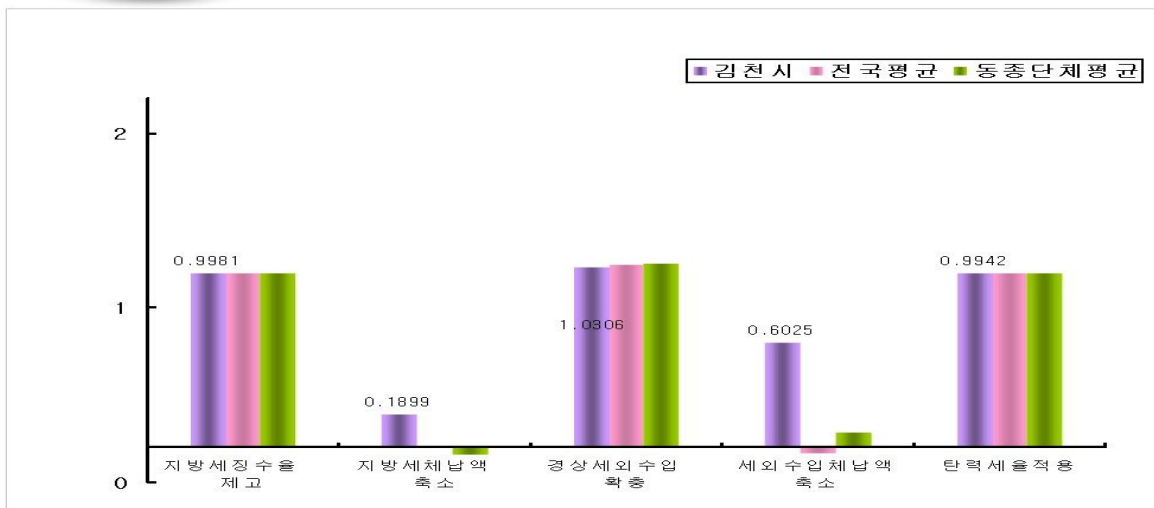
건전성



- ▶ 건전성 분야는 자체세입을 제외한 전 분야가 전국 및 동종단체평균대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이는 스포츠시설, 문화시설,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이 동종단체 대비 우수하고 인건비, 운영비 등의 지속적인 절감 노력과 지속적인 채무관리로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서 기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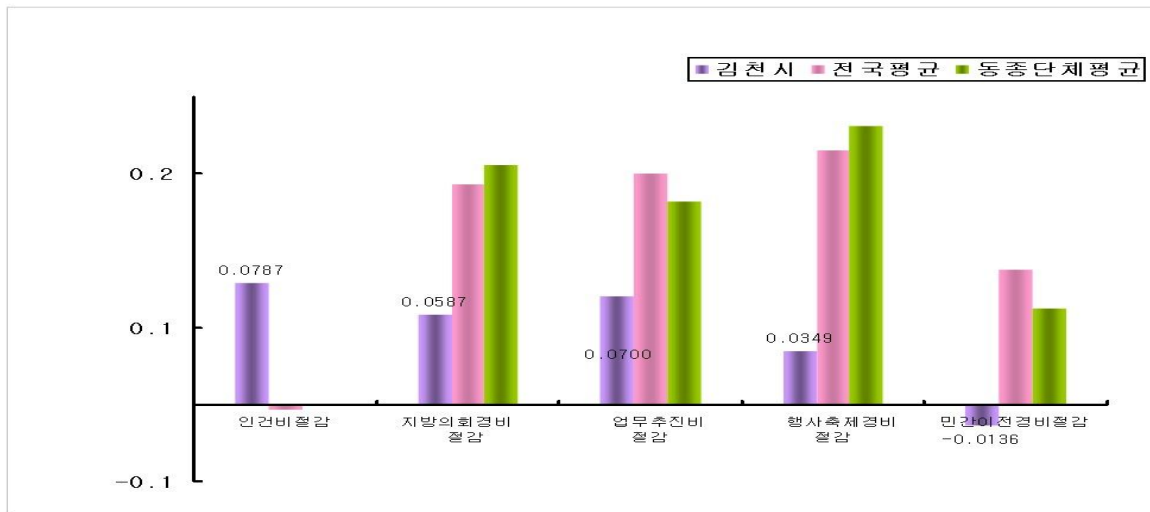
단, 세입 증가를 위한 자체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나 농업종사인구와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은 도농복합도시로 자체세입 확충에 취약한 지수를 보이고 있으며, 통합재정규모의 확충을 통한 흑자운영 노력이 요구됨.

효율성(세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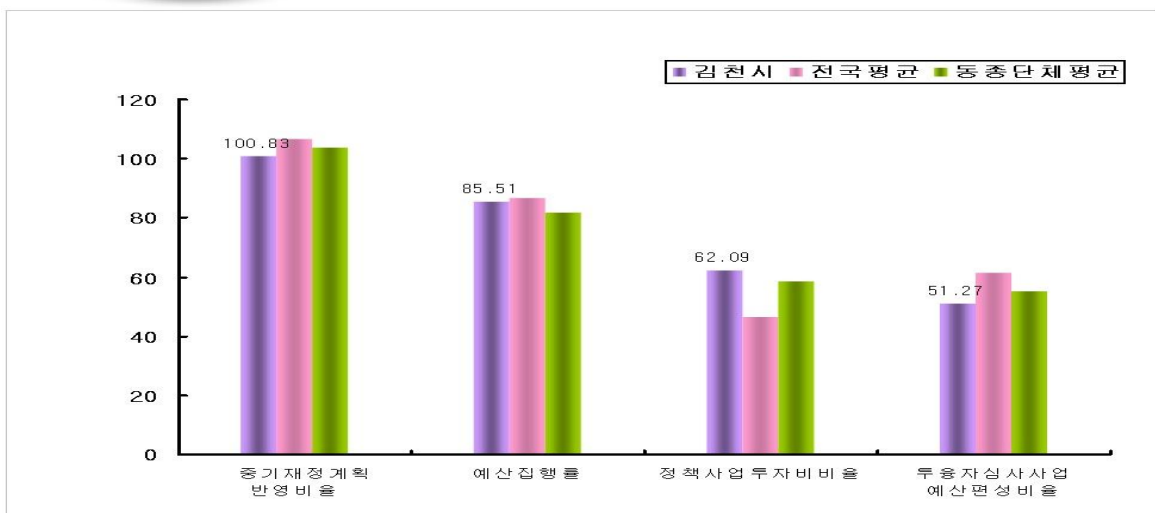
-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를 위해 징수책임제 운영과 적극적인 행정제재 조치 등 노력이 전국 및 동종단체 대비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효율성(세출)



- ▶ 결원발생시에도 공무원 채용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등 인건비 절감을 위한 노력은 전국 및 동종평균대비 매우 우수하나,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행사 축제경비, 민간이전경비 등 기타 세출부문의 절감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단, 행사축제경비, 민간이전경비의 경우 '09년 시승격 60주년 기념으로 인한 일시적 증가로 향후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계획성



- ▶ 중기재정계획, 예산집행률, 정책사업투자비비율 등 재정의 계획성 부문은 동종 단체 대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단, 투융자심사사업의 경우 국도비보조율이 심사시 계획액보다 적어져 편성비율이 동종평균 대비 낮은 지수를 보이고 있음.

◆ 재정분석 결과

▶ 총 평

-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동종단체 평균보다 양호하나 재정적자가 발생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건전성이 약화, 흑자노력이 필요.
- 경상비용절감 노력과 지방채 관리로 경상수지와 채무구조는 건전하나 자체수입비율과 증감률이 낮아 세입기반 조달능력과 성장성 강화 대책 필요함
- 지방세징수율과 체납액 징수실적이 높아 세입확충 노력이 양호함.
- 인건비 절감 외에는 전체적으로 경비절감노력이 낮아 경상경비의 절감을 통한 효율성 제고노력이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함.
- 재정계획성은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이 낮으나, 그 외 지표는 대체로 동종단체에 비해 양호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수 및 미흡 재정지표

구분	지 표 명	지표값	핵 심 사 항
우수	지방세 체납액 축소 노력도	0.1899	체납징수목표와 책임제,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등의 효율적인 관리로 지방세 체납액 축소 노력이 우수함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노력도	0.6025	부서별 리·통별 담당 책임제 실시, 체납 징수 실적보고대회 등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에 적극 노력함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787	결원 발생시에도 인력충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인건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미흡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587	국외여비와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에 대한 절감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개선 노력이 필요함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0349	시승격 60주년 행사 등 각종 행사축제 경비가 증대되어 행사축제경비 절감실적이 미흡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0136	보육과 농업관련 보조경비 그리고 문화 예술활동지원 등으로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이 미흡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자치단체 의견

- ▶ 자체수입 및 세외수입 등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대책마련과 세출구조, 경상경비 절감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②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㉔ 정계처분자 각종 수당 부당 지급

[감사주체] 경상북도 정기 종합감사(2010. 9. 6 ~ 9. 14)

[지적사항]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행정안전부)에 직위해제자와 정직처분 대상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경우 직위해제일수 또는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 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에 견책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김천시 ○○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공무원 품위유지위반행위로 2008.7.18 ~ 2009. 1.7.까지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과 ○○○외 1인의 2008년도 연가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직위해제 기간을 공제할 경우 연가보상금 지급이 불가함에도 2008.12.29. 연가보상금 1,617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 음주운전행위로 2009.1.7. 김천시인사위원회로부터 2개월 감봉처분을 받은 ○○면 ○○○의 2009년도 연가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정직기간을 공제할 경우 연가보상금 지급이 불가함에도 2009.12.26. 연가보상금 762천원을 지급하였으며,
 - 성실의무위반행위로 2009.7.8. 김천시인사위원회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은 ○○과 ○○○의 경우 다음해 1월분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2010.1.20. 정근수당 937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은 회수하시고, 앞으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

- 부당지급 수당 회수(2010.11.17) : 4건 3,316,590원

㉔ 우회도로 확장공사 부적정

[감사주체] 경상북도 정기 종합감사(2010. 9. 6 ~ 9. 14)

[지적사항]

- 건설공사는 건설공사표준품셈, 각종 제 지방서 기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에도
 - 김천시 ○○과에서는 국도 ○호선 우회도로 확장 ○차 공사를 추진하면서 국도 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국토해양부 2009.08)에 의거 구조물 터파기시 물푸기 작업이 반영된 경우에는, 용수토사로 보아 기계(90%+인력10%)로 계상함이 타당함에도, 터파기 품을 기계(90%)+수중(30%)으로 적용하여 공사비 62,547천원(제경비 포함)상당이 과다 계상된 사실이 있고,
 - 콘크리트 구조물(교량벽체, 암거공 날개벽 및 슬래브)시공을 위한 거푸집은 시공성, 경제성이 유리한 유로품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고가의 거푸집(보통마감)을 적용함으로써 공사비 2,508천원(제경비 포함)상당을 과다 계상하였으며,
 - 또한 교량 교면방수에 있어 라멘교 및 슬래브(PSC, RC)교량은 침투식 방수 공법을, 거더교(PSC, STEEL)교량은 경제적인 침투식 방수 공법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함에도 고가인 도막식 방수를 적용하여 공사비 13,325천원(제경비 포함)상당 과다계상 하는 등 총 공사비 78,38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과다 계상된 공사비 78,380천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조치하시고,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

- 설계변경(2010.12.22) : 감액 83,443,558원

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 부적정

[감사주체] 경상북도 정기 종합감사(2010. 9. 6 ~ 9. 14)

[지적사항]

-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산출에 적정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공사계약 일반조건 1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으면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사기간 중 감액요인이 발생할 경우 실정보고나 설계변경 등 적정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김천시 ○○과에서는 2009년부터 ○○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축제공에 소요될 준설토 94,049m³를 L=10km떨어진 지점에서 운반하는 것으로 설계에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 같은 과에서 2010년에 별도로 발주한 ○○천 하도 준설사업의 준설토사 50,748m³를 동 사업장에 반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실정보고나 설계변경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공사비 187,016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과다계상된 공사비 187,016천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조치 하시고,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

- 설계변경(2010.12.22) : 감액 187,016,000원

㉔ 공사 추진 부적정

[감사주체] 경상북도 정기 종합감사(2010. 9. 6 ~ 9. 14)

[지적사항]

-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역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 도로설계편람 제4편에 의하면 기타 안전시설 미끄럼방지포장의 설치는 도로의 선형에 있어서 전후 선형의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행속도의 차이가 20km/hr이상인 변화구간 및 기타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간에만 설치하며 비효과적인 무분별한 설치의 규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김천시 ○○과에서는 ○○~○○길 공사를 추진하면서 신규 덧씌우기 포장 구간에 미끄럼방지포장 A=712㎡를 중복 반영하여 사업비 27,330천원을 과다 계상되게 하였고,
 - 또한, 도로 시선유도시설인 표지병 설치의 도로안전시설 설치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시가지도로는 8m간격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사 전 구간에 대하여 별도의 수량 산출없이 임의 계상하여 사업비 7,152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는 등 공사비 34,482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과다계상된 공사비 34,482천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조치 하시고,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

- 설계변경(2011.1.24) : 감액 36,260,000원

㉮ 토목사업 추진 부적정

[감사주체] 경상북도 정기 종합감사(2010. 9. 6 ~ 9. 14)

[지적사항]

-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산출에 적정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산 ○○공사를 추진하면서 자연석쌓기에 사용할 자연석을 인근 하천에서 채집하면서 실제로는 인력30%+장비70%로 채집하였으나 설계상 인력 100% 계상하여 사업비 10,926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한 사실이 있음
 - 암거(2.0 *1.5) 설계에 있어 높이 2.0M 이상에 대하여 계상하여야할 비계를 반영 사업비 559천원(제경비포함)을 과다 계상하였음.

[처분요구]

- 과다계상된 공사비 11,485천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조치 하시고,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

- 설계변경(2010.10.26) : 감액 11,485,000원

㉮ 국민기초생활급여 지급 부적정

[감사주체] 경상북도 정기 종합감사(2010. 9. 6 ~ 9. 14)

[지적사항]

-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신규로 보장 결정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면서 최초 지급금액을 급여 신청일에 따라 전액 또는 50%를 지급 하여야 함에도 ○○면 ○○○ 등 12인에 대하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생계 급여 2,312,6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 또한 최종생계급여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 등 10인에게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를 지급 하여야 함에도, 1,700,390원의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 외 2인에게는 장제급여를 지급할 때에 사망한 달 다음달에 지급된 생계급여를 상계한 차액만 지급 하여야 함에도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장제급여 459,860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국민기초생활급여 지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과 지급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액 459,860원과 미 지급된 급여액 4,101,030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고, 앞으로는 국민기초생활급여 지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

- 미지급 기초생활급여 4,101,030원 지급 및 지급 459,860원 회수 완료(2010.10.29)

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부적정

[감사주체] 경상북도 정기 종합감사(2010. 9. 6 ~ 9. 14)

[지적사항]

- 김천시 ○○동 ○○번지에 김천시 ○○과장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주)○○가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설치키 위하여 제출한 산지전용 협의를 하면서 본 신청지가 대지 주변에 있고 평탄한 나대지인 토지라는 이유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019,240원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하였으며,
- 또한 김천시 ○○면 ○○리 산 ○○번지 등 4개소에 대하여 (주)○○ 등 4개 회사로부터 통신용 중계기 설치 목적의 산지전용 허가를 하면서 36㎡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75,810원을 100% 감면대상으로 해석하여 부과하지 않음으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총 2,095,050원을 부과 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미 부과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095천원에 대해서는 즉시 부과 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2010.10.4)

㉕ 미등기 양도자산 취득세 누락(부동산 실명법)

[감사주체] 정부 정기 합동감사(2009. 10. 26 ~ 11. 10)

[지적사항]

-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는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대통령령이 정한 율(1일 3/10,000)과 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함에도
- 김천시 ○○과는 미등기양도 자산1건 302천원 부동산실명법 3건 7,805천원을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부동산실명법 위반 실무담당자와 세무부서의 실무담당자의 정보공유를 통해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누락된 세금은 추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

- 추징(2010.1.12) : 4건 8,278,830원

㉔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

[감사주체] 정부 정기 합동감사(2009. 10. 26 ~ 11. 10)

[지적사항]

- 김천시 ○○과는 2,150m³/일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2007.08월 처리공법 선정방안 보고시 설계용역사에서 처리공법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여 처리공법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처리공법을 선정하였으며,
- 기본및실시설계보고서에 고농도 하수 유입시 잉여슬러지발생량이 363kg/일 이므로 탈수기 용량을 근무시간(8시간)기준으로 예비없이 12kg/시간×4분을 설치하고, 기기 고장시 가동시간을 연장하여 슬러지 처리에 대처토록 계획하여야 함에도 기기 고장을 고려 예비 1분을 설치함으로서 시설의 과대 설치로 41백만원 상당의 예산 낭비가 우려됨.

[처분요구]

- 처리공법은 관련규정에 의거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근거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산정토록하고, 슬러지 탈수설비용량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예비1대분 41백만원 상당액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

- 설계변경(2010.7.14) : 감액 57,420천원

㉔ 조사료용 기계·장비 구입 관련 보조금 정산 부적정

[감사주체] 감사원 특별 감사(2009. 9. 29 ~ 10. 8)

[지적사항]

- 김천시에서 2007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의 사업자인 ○○법인 등 2개 법인이 보고한 사업집행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정산하였다.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이미 교부된 보조금은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고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농림부 훈령 제1265호, 2007. 2. 28.) 제4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 보조금집행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 등에는 사업의 실적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위 법인이 트랙터 등을 104,400천원에 구입하고도 그보다 8,900천원이 비싼 113,300천 원에 구입한 것으로 정산보고를 하는 등 [별표] “조사료용 기계·장비 구입 관련 보조금 정산명세”와 같이 조사료용 기계 등을 209,800천원에 구입하고도 그보다 14,700천원이 비싼 224,500천원에 구입한 것처럼 정산 보고하였다. 따라서 김천시에서는 실제 구입금액 209,800천원에 맞추어 125,880천원(자부담 83,920천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정산 처리하여야 했다.

- 그런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조사업자가 보고한 224,500천원에 맞추어 위 정당보조금 125,880천 원보다 6,120천 원이 많은 132,000천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정산하였다. 그 결과 위 보조사업자들에게 6,120천원의 보조금이 과다 교부되었다.

[처분요구]

- 김천시장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의 규정 등에 따라 ○○법인 등 2개 법인으로부터 과다교부된 보조금 6,120,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

- 과다교부액 회수(2011.2.11) : 6,120,000원

③ 주민 주요 관심항목

③-1. 인건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인건비(B)	비율(B/A)	비고
계		428,867	61,289	14.29	
인건비 (101)	보수(101-01)		41,618	9.70	
	기타직보수(101-02)		1,356	0.3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5,122	1.19	
업무 추진비 (203)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275	0.06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46	0.01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193	0.05	
직무수행 경비 (204)	직책급업무추진비(204-01)		124	0.03	
	직급보조비(204-02)		1,679	0.39	
	특정업무수행활동비(204-03)		427	0.10	
포상금 (303)	성과상여금(303-02)		2,489	0.58	
연금 부담금등 (304)	연금부담금(304-01)		6,538	1.52	
	국민건강보험금(304-02)		1,326	0.31	
민간이전 (307)	연금지급금(307-07)		96	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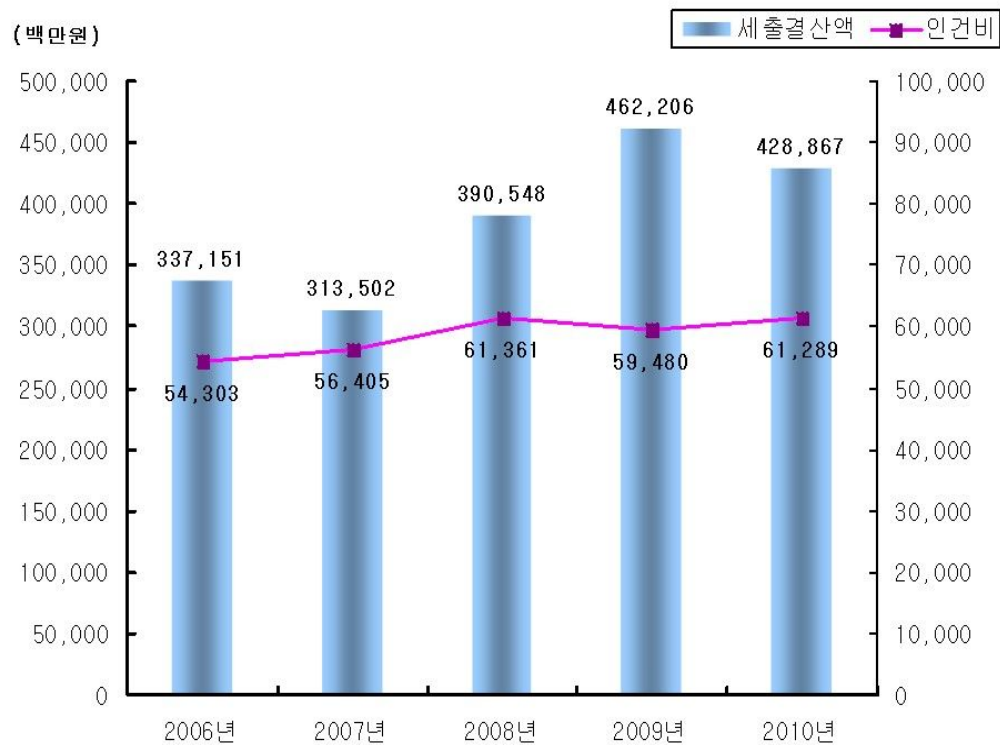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13개 통계목)
- ▶ 보수(101-01) :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337,151	313,502	390,548	462,206	428,867
인건비	54,303	56,405	61,361	59,480	61,289
비율(%)	16.11	17.99	15.71	12.87	14.29

- ▶ 2008년도부터 인건비에 성과상여금(303-02)이 신규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인건비 연도별 증감현황



- ▶ 전년대비 세출결산액 감소로 인해 상대적으로 인건비 집행비율 증가.

③-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업무추진비(B)	비율(B/A)	비 고
계	428,867	521	0.12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275	0.06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246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337,151	313,502	390,548	462,206	428,867
업무추진비	478	485	551	527	521
비 율 (%)	0.14	0.15	0.14	0.11	0.12



◆ '10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 1”

③-3.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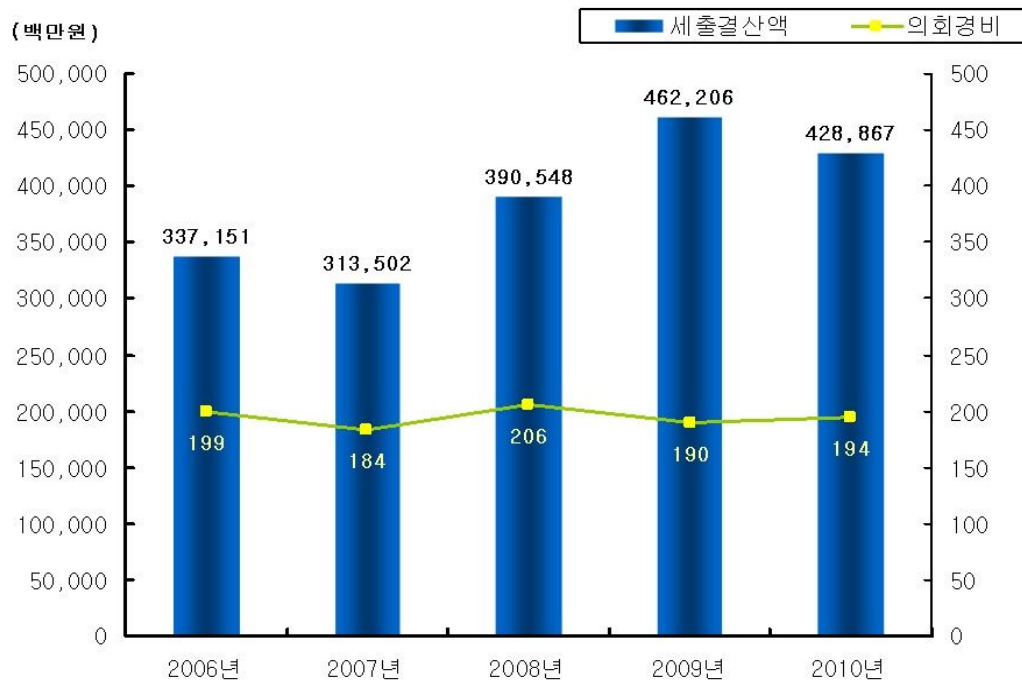
구 분	세출결산액(A)	의회경비(B)	비율(B/A)	비 고
계	428,867	194	0.05	
국외여비(205-04)		30	0.01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205-05)		90	0.02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74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205-04 ~ 205-06 집행총액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337,151	313,502	390,548	462,206	428,867
의회경비	199	184	206	190	194
비율(%)	0.06	0.06	0.05	0.04	0.05

지방의회경비 연도별 증감현황



③-4.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계	428,867	2,705	0.63	
행사운영비(201-03)		723	0.17	
행사실비보상금(301-10)		1,090	0.25	
민간행사보조(307-04)		872	0.20	
행사관련시설비(401-04)		20	0.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연도별 증감현황(도표, 그래프 등)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337,151	313,502	390,548	462,206	428,867
행사·축제경비	4,108	3,077	2,797	3,351	2,705
비율(%)	1.22	0.98	0.72	0.72	0.63



▶ 2006년 전국체전 개최 이후 행사·축제경비 집행비율 감소추세에 있음.

◆ '10년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 “붙임 2”

③-5.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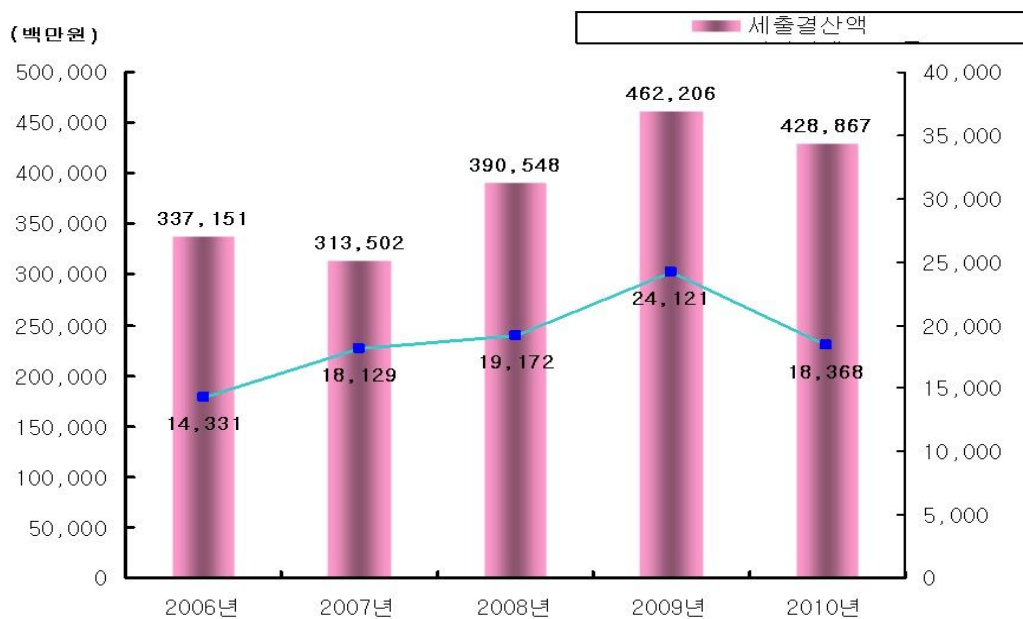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단체보조금 (B)	비율 (B/A)	비 고
계	428,867	18,368	4.28	
민간경상보조(307-02)		17,086	3.98	
사회단체보조(307-03)		410	0.10	
민간행사보조(307-04)		872	0.20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지출액
- ▶ 단, 민간자본보조(402-01)는 제외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337,151	313,502	390,548	462,206	428,867
민간단체 보조금	14,331	18,129	19,172	24,121	18,368
비율(%)	4.25	5.78	4.91	5.22	4.28

민간단체 보조금 연도별 증감현황



◆ '10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 “붙임 3”

③-6. 기본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기본경비(B)	비율(B/A)	비 고
계	428,867	1,974	0.46	
사무관리비(201-01)		1,549	0.36	
공공운영비(201-02)		176	0.04	
국내여비(202-01)		234	0.05	
월액여비(202-02)		0	0.00	
자산및물품취득비(405-01)		15	0.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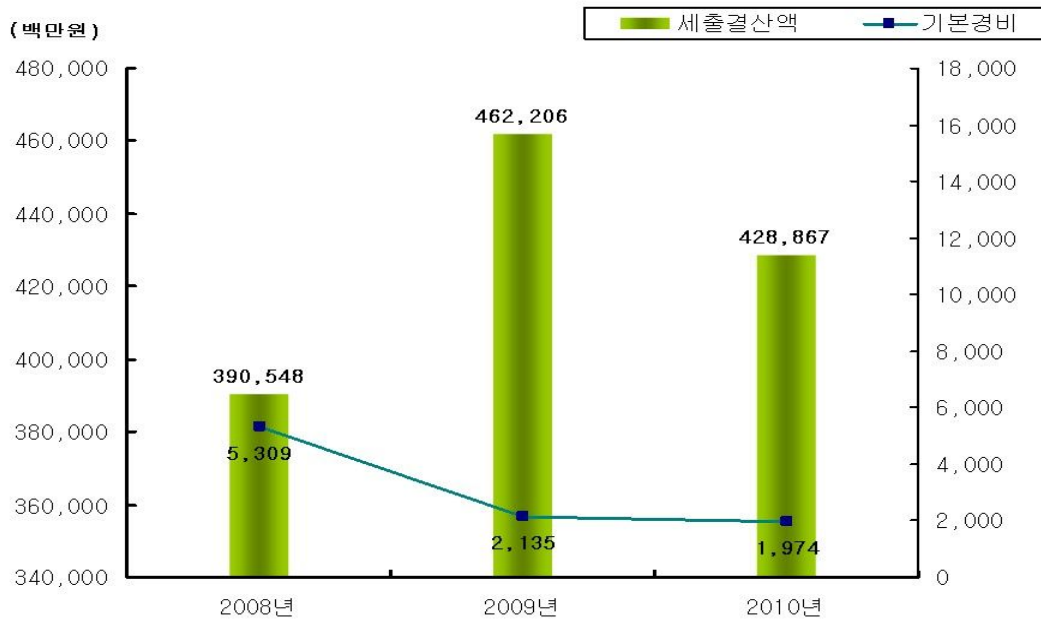
▶ 단, 행정운영경비에 포함된 기본경비만 해당됨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390,548	462,206	428,867
기본경비	5,309	2,135	1,974
비율(%)	1.36	0.46	0.46

▶ '08년 이후 사업별예산제도 실시로 '05~'07년도 행정운영경비 산출되지 않음.
'08년~'10년 자료만 공개

기본경비 연도별 증감현황



③-7. 포상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포상금(B)	비율(B/A)	비 고
계	428,867	1,988	0.46	
포상금(303-01)		1,988	0.4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포상금(303-01) 집행총액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337,151	313,502	390,548	462,206	428,867
포상금	1,315	2,693	938	1,451	1,988
비율(%)	0.39	0.86	0.24	0.31	0.46

▶ 2008년 이후 포상금 과목이 포상금(303-01)과 성과상여금(303-02)로 구분되었으므로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③-8.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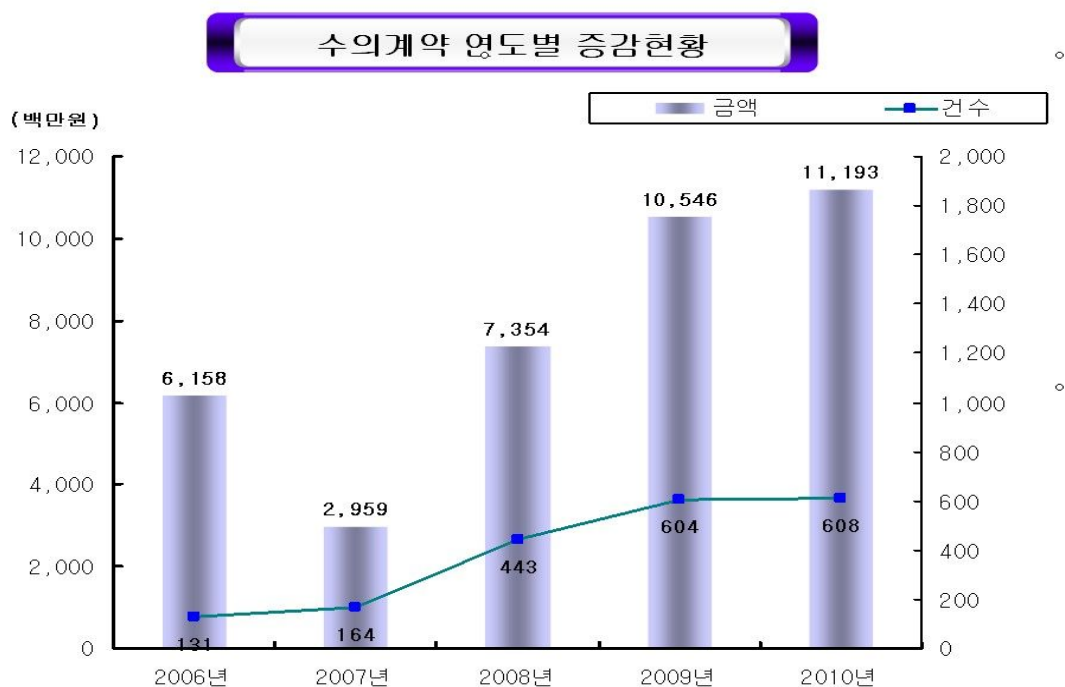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000만원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10년	1,195	90,155	608	11,193	50.88	12.42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 제외)
- ▶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 구분없이 모두 포함) 실적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중 G2B 포함, 수의계약은 G2B 미포함
- ※ '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1,000만원 이상 내역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의계약실적	건 수	131	164	443	604	608
	금 액	6,158	2,959	7,354	10,546	11,193



③-9. 연말지출 비율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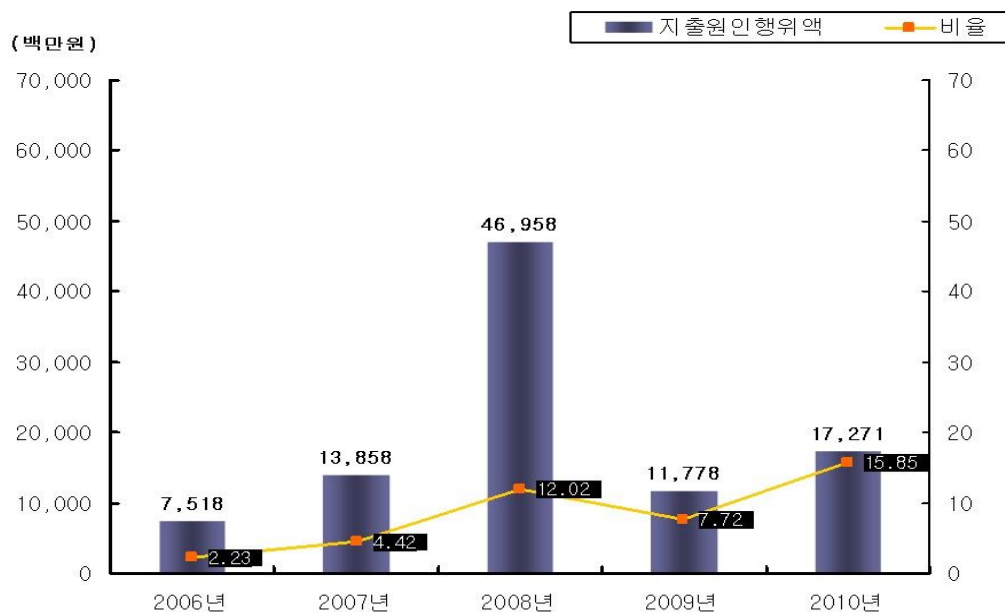
구 분	세출결산액(A)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비율(B/A)
계	108,935	17,271	15.85
시설비(401-01)	107,570	16,392	15.24
감리비(401-02)	888	783	88.15
시설부대비(401-03)	457	96	21.01
행사관련시설비(401-04)	20	0	0.00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 '10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월~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A)	337,151	313,502	390,547	152,613	108,935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7,518	13,858	46,958	11,778	17,271
비율(%)(B/A)	2.23	4.42	12.02	7.72	15.85

연말지출 연도별 증감현황



③-10. 지방세 지출예산현황

- 개 요

(단위 : 백만원, %)

구 분		'10년	'09년
비과세·감면액(A)		5,486	5,855
	비과세	4,357	4,281
	감면	1,129	1,574
지방세 징수액(B)		48,250	47,368
비과세·감면율(A/A+B)		10.21	11.00

-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0년도		'09년도		증감 (C=A-B)	증감율 (C/B)
	(A)	구성비(%)	(B)	구성비(%)		
총 계	5,486	100.00	5,855	100.00	△369	△6.30
일반공공행정	1,680	30.62	1,583	27.04	97	6.12
공공질서 및 안전	35	0.64	35	0.59	0	0.82
교 육	382	6.96	450	7.68	△68	△15.14
문화 및 관광	209	3.81	199	3.40	10	5.26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713	13.00	674	11.52	39	5.73
보 건	53	0.96	50	0.86	3	4.57
농림해양수산	216	3.94	220	3.76	△4	△1.97
산업·중소기업	97	1.78	95	1.62	2	2.86
수송 및 교통	48	0.88	424	7.25	△376	△88.63
국토 및 지역개발	86	1.58	196	3.35	△110	△55.8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 가	1,905	34.72	1,865	31.85	40	2.15
외 국	0	0.00	0	0.00	0	0.00
기 타	62	1.13	64	1.09	△2	△2.88

- 세목별 현황('10년 결산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 방 세 법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
			소 계	비과세	감 면		
합 계		5,486	4,681	4,358	323	787	18
보통세	소 계	5,225	4,447	4,139	308	760	18
	주민세	261	258	180	78	3	0
	재산세	4,209	4,014	3,790	224	177	18
	자동차세	749	169	169	0	580	0
	지방소득세	6	6	0	6	0	0
목적세	소 계	261	234	219	15	27	0
	도시계획세	261	234	219	15	27	0
	사업소세	0	0	0	0	0	0



지방세지출예산제도

- 지방세 감면, 비과세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한 제도(지방세법 제9조의3)

③-11. 맞춤형복지비 현황

◆ 맞춤형복지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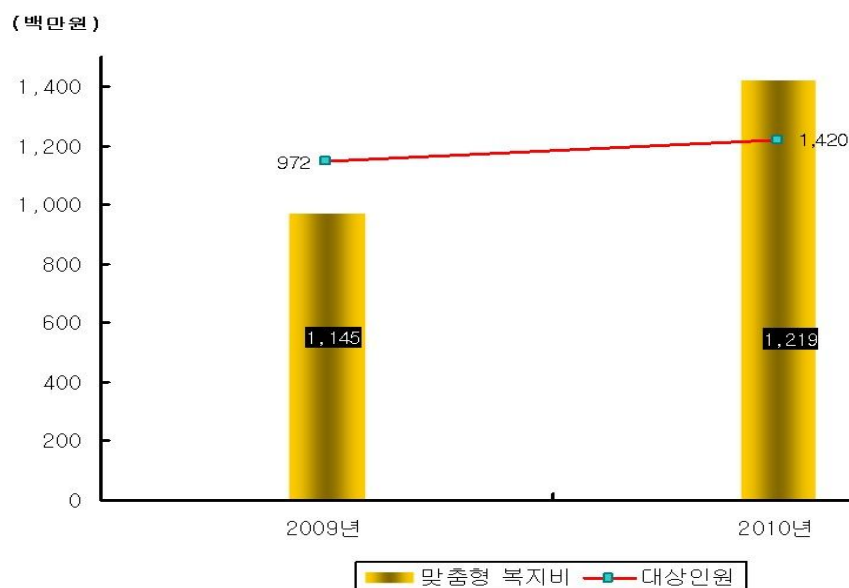
구 분	대상인원 (A)	세출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C/A)
'10년	1,219	428,867	1,420	0.33	1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 세출결산액 : '10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 맞춤형 복지비 : '10년 결산결과 포상금(303-01) 중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맞춤형 복지비 지출액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비고
	2009	2010	
대상인원(A)	1,145	1,219	
세출결산액(B)	462,206	428,867	
맞춤형 복지비(C)	972	1,420	
비율(%) (C/B)	0.21	0.33	
1인당 평균배정액(C/A)	1	1	

맞춤형 복지비 연도별 증감현황



③-12. 중기지방재정계획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① 세 입	542,293	583,451	563,093	596,795	603,615	2,889,247	2.81
자체수입	181,355	198,939	168,565	185,557	170,960	905,376	△0.84
의존수입	360,938	384,512	394,528	411,238	432,655	1,983,871	4.64
지 방 채	0	0	0	0	0	0	0.00
② 세 출	542,293	583,451	563,093	596,795	603,615	2,889,247	2.81
경상지출	138,041	116,530	103,410	103,639	108,240	569,860	△5.55
사업수요	404,252	466,921	459,683	493,156	495,375	2,319,387	5.4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 연평균 증가율 = $[(\text{최종연도}/\text{기준년도})^{1/(\text{기준년도}-\text{최종년도})}-1] \times 100$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계획, 여건변동에 따라 매년 연동(수정)계획 수립